



MINI Market Report

국가	일본
제품	양배추, 배추, 무

주관사 :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CONTENTS

I. 일본 가격 정보	1
1. 온라인 오픈 마켓 판매 현황	1
2. 수입 농산물 가격 추이	2
II. 일본 통관 정보	5
1. 관세 및 기타 세금	5
2. 통관 거부사례	6
3. 통관절차	8
III. 일본 검역 정보	11
1. 농산물의 수입 관련 규제	11
2. 기본적인 검역 절차	12
3. 관련 제도	14
IV. 일본 바이어 정보	16

※ 참고자료

일본 가격 정보

1. 온라인 오픈 마켓 판매 현황

□ 온라인 오픈 마켓 판매 현황

업체명	vege-euphoria	KM서비스	밤의 야채가게
제품 이미지			
제품명	사보이양배추 호주산 1개	커트 양배추 1kg (계절에 따라 원산지 다름)	사보이양배추 뉴질랜드산 1개
가격	JPY ¥ 2,057	JPY ¥ 540	JPY ¥ 1,800
	USD 23.08	USD 4.97	USD 16.57
업체명	오가닉 프로모션(주)	오가닉 프로모션(주)	오가닉 프로모션(주)
제품 이미지			
제품명	중국산 사보이양배추 1케이스 6kg~9kg	자색무(중국산) 1케이스(10개 전후)	미국산 방울양배추 1케이스 10kg(400~800개)
가격	JPY ¥ 11,918	JPY ¥ 4,399	JPY ¥ 22,848
	USD 109.73	USD 40.50	USD 210.37

출처 : 라쿠텐 (www.rakuten.co.jp)

YAHOO 쇼핑 (shopping.yahoo.co.jp)

Amazon (www.amazon.co.j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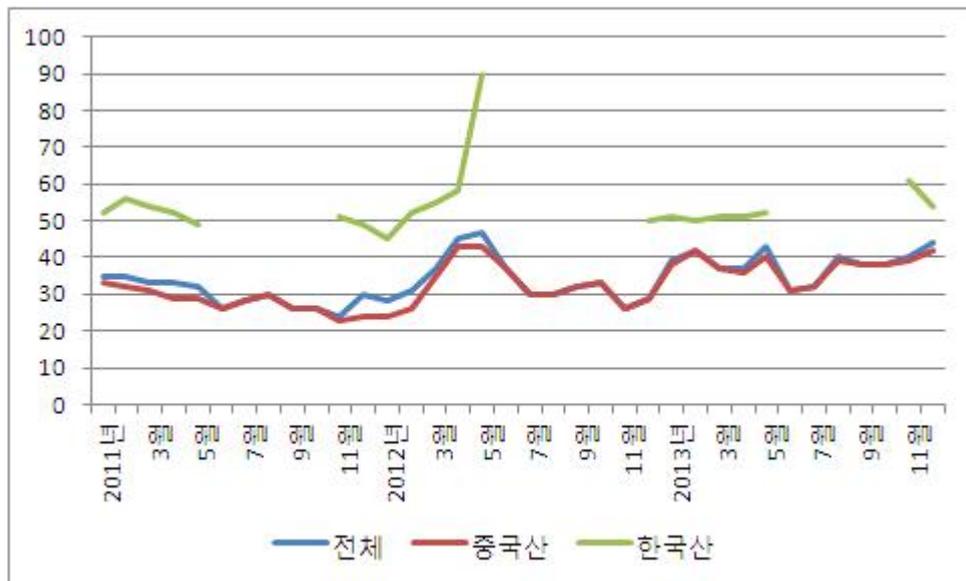
- 일본 소비자는 자국산 선호 경향이 뚜렷하여, 온오프라인 소매 점포에서 판매되는 채소는 사보이양배추나 커트 채소, 자색채소 등 특이한 것이 아닌 이상은 일본 국 내산이 대부분임
- 수입 채소는 수입상사에서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판매되어, 대부분 가공식품의 원료 로 쓰임
 - 일반 양배추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및 한국, 방울양배추의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, 호주, 미국 등
- 2006년 잔류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, 소비자들의 안전 지향성 등으로 각종 농산물의 수입량이 2006년 이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상태임

2. 수입 농산물 가격 추이

□ 수입 양배추 가격 추이

< 수입 양배추 가격 추이 >

단위 : 엔/kg



출처 :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(www.alic.go.j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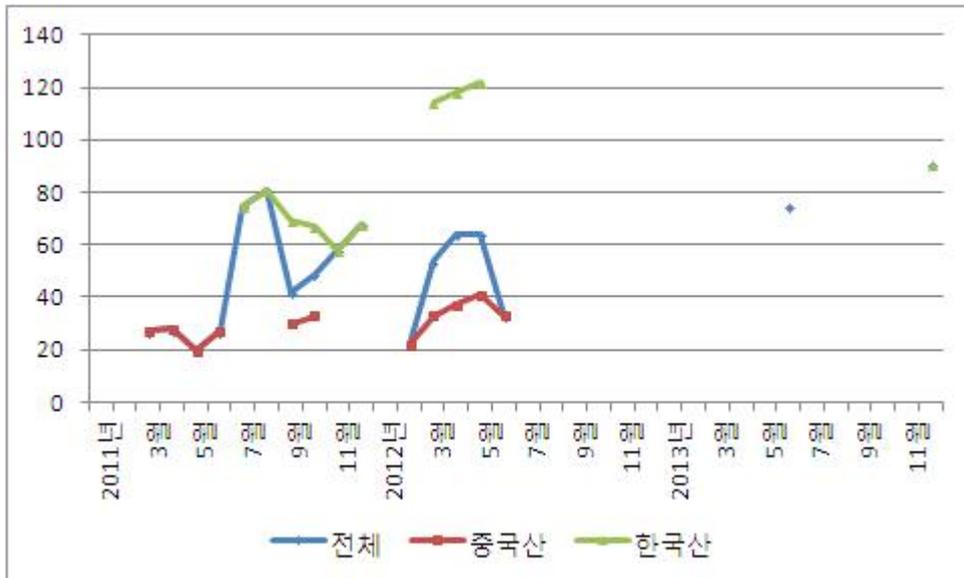
- 한국산 양배추는 주로 겨울~봄에 걸쳐 수입되어, 가격 또한 겨울~봄에만 집계되고 있음

- 일본의 양배추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 양배추의 평균가격 또한 중국산 양배추의 가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, 한국산 양배추의 가격은 중국산 및 전체 수입 양배추의 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
- 2012년 5월에 kg당 90엔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, 평균적으로 kg당 50엔 전후의 가격을 나타냄

□ 수입 배추 가격 추이

< 수입 배추 가격 추이 >

단위 : 엔/k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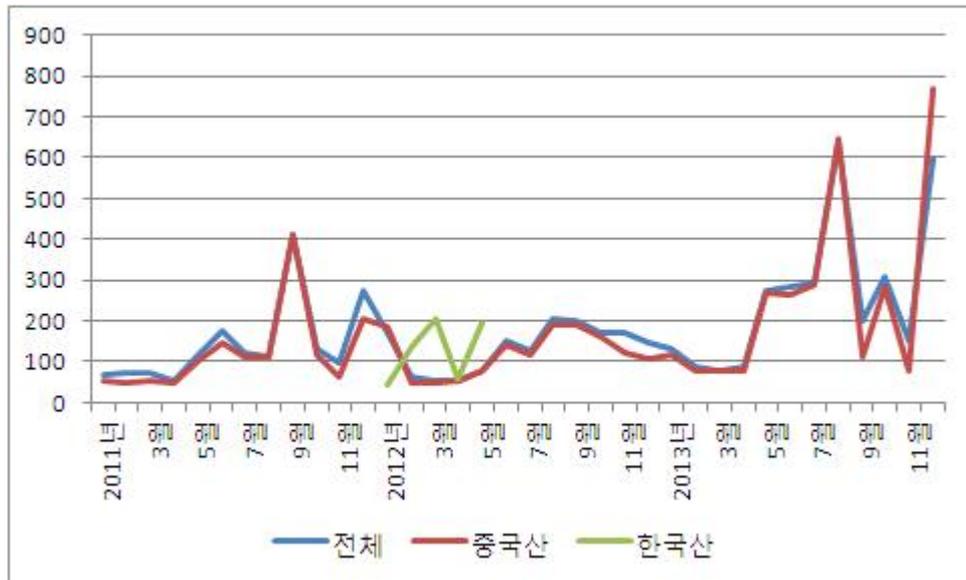
출처 :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(www.alic.go.jp)

- 2013년 배추의 수입량은 약 30톤으로 매우 미미하며, 수입되는 시기 또한 극히 한정되어 있음
 - 한국으로부터의 배추 수입은 신선 배추보다는 배추김치로 가공되어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한국산 배추김치는 온오프라인 소매 점포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음
- 주요 수입국은 한국, 대만, 중국 등이 있으며 가격은 한국산 배추가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대만, 중국 순으로 형성되어 있음
- 중국산 배추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kg당 30엔 전후인 데 비하여, 한국산 배추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kg당 60~70엔 정도이나 변동 폭이 큰 편

□ 수입 무 가격 추이

< 수입 무 가격 추이 >

단위 : 엔/kg



출처 :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(www.alic.go.jp)

- 2006년 검역 강화로 수입량이 대폭 감소한 이후 수입되는 무는 대부분 건조 무로, 신선 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입되고 있음
-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, 약 99%의 무가 중국산이며, 그 외 수입국은 네덜란드, 벨기에, 뉴질랜드, 한국 등이 있음
- 수입 무의 가격은 중국산보다 유럽산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,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
- 평균적인 가격은 유럽산 kg당 400엔 내외, 중국산 kg당 100엔 내외, 한국산 kg당 200엔 정도이나,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저렴할 때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심한 편임

II 일본 통관 정보

1. 관세 및 기타 세금

□ 관세율

- 양배추 및 배추는 십자화과의 채소로서 HS CODE 「0704」로 분류되며, 무는 뿌리채소로서 HS CODE 「0706」으로 분류됨

< 관세율 >

HS CODE	품목	기본세율	협정세율
0704	양배추, 꽃양배추, 구경양배추, 케일 그 외 십자화과의 식용 채소(신선 및 냉장)		
0704.90.020	결구양배추	5%	3%
0704.90.030	배추	5%	3%
0706	당근, 순무, 샐러드용 사탕무뿌리, 선모, 샐러리액, 무 그 외 식용 뿌리(신선 및 냉장)		
0706.90.090	무	5%	3%

출처 : 관세청 (www.customs.go.kr)

□ 기타 세금

- 소비세 (부가가치세)

- 국내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는 다음의 국내 및 수입거래에 대해서 비과세인 일정 거래를 제외하고 과세되며 2014년 9월 현재 소비세율은 8% (지방소비세 1%를 포함)로 단일 세율임
- 국내거래란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어 행하는 자산의 양도 및 대출, 역무의 제공을 의미하며, 수입거래란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화물거래를 의미함
- 금융거래, 자본거래, 의료, 복지, 교육 분야의 일정 거래는 비과세이며, 수출거래나 국제통신, 국제운수 등의 이른바 수출 유사거래도 소비세가 면제. 국내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수입거래를 하는 자는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신

고·납부하여야 함

- 단, 생산·유통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, 매입에 대한 소비세를 매상에 대한 소비세에서 공제함
- 지난 2011년 9월에 취임한 전 재무상 출신 노다 요시히코 현 일본총리는 일본 국채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(전체 GDP의 200% 가량) 이른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 수입 증대를 추진해왔음
- 기존 5%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8%, 2015년 10월 10%로 2 단계에 걸쳐 상향됨

2. 통관 거부사례

□ 2000년 이후 통관 거부사례

< 통관 거부사례 >

품명	조문	생산국	부적격내용	처치상황	날짜
양배추 (신선)	11	중국	성분규격 부적합: 메타미도포스(Methamidophos) 1.2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	2005/05
양배추 (신선)	11	중국	성분규격 부적합: 클로르피리포스(Chlorpyrifos) 0.09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	2006/01
양배추 (신선)	11	중국	성분규격 부적합: 클로르피리포스 0.14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 (일부 보관, 일부 조사 중)	2006/01
양배추 (신선)	11	중국	성분규격 부적합: 클로르피리포스 0.13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 (전량보관)	2006/02
사보이 양배추 (신선)	11	벨기에	성분규격 부적합: 디페노코나졸(Difenoconazole) 0.4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 (전량보관)	2007/01
양배추 (신선)	11	뉴질랜드	농약 잔류량 초과: 사이프로코나졸(Cyproconazole) 0.08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 (전량보관)	2013/08

양배추 (신선)	11	네덜란드	농약 잔류량 초과: 펜시쿠론(Pencycuron) 0.03ppm 검출	전량 판매 완료	2014/05
무 (건조)	7	중국	사용기준 부적합(이산화황과량잔존: 0.087g/kg)		2000/04
무잎 (신선)	11	대한민국	농약 잔류량 초과: 디메토모르프(Dimethomorph) 0.07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 (조사 중)	2009/10
20일무 (적환무) (신선)	11	네덜란드	농약 잔류량 초과: 보스칼리드(Boscalid) 0.02 ppm 검출	폐기, 환송 등 지시 (조사 중)	2011/12

출처 : 일본 후생노동성 (www.mhlw.go.jp)

- 신선 양배추, 배추, 무의 통관 거부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며, 대부분의 원인은 식품위생법 제11조 「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 규정된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임
- 위 규정은 2006년 시행되어 이후 일본의 신선 농산물 수입이 급감한 바 있으나, 그 후 다시 조금씩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

3. 통관절차

□ 수입통관의 흐름

- 수입항 도착 → 보세지역으로 화물반입 → 수입신고, 납세신고 → 세관에 의한 심사, 검사 → 관세 등의 납부 → 수입허가 → 보세지역으로부터 화물반출 → 수입자 화물 인수의 수순으로 이루어짐

□ 수입신고

- 수입신고 시기

-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임
-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신고가 인정되고 있음

- 수입신고자

-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짐

- 제출서류

- 수입신고는 통상, 수입(납세)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수입 부문의 품목별(예: 농수산물, 기계 등) 통관 담당 부문에 제출함

- 수입신고서 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

- 반입서(Invoice)
- 선박증권(또는 항공화물운송장)
- 보험료 명세서
- 운임 명세서
- 포장 명세서

- 이 밖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

- 타 법령의 허가 및 승인증(식물방역법 등의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화물의 경우)
- 특혜 원산지 증명서(특혜 관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)
- 감면세 명세서(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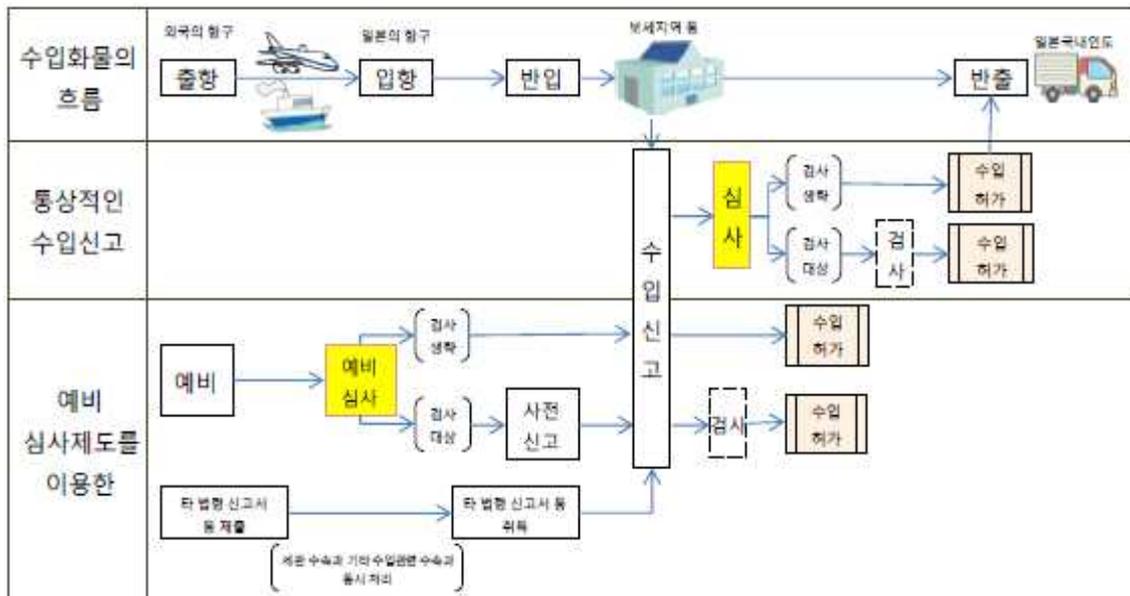
□ 항만 물류 수입 절차

- 통관 위임 및 보세 지역에 반입

- 선박이 도착하면 선박 회사로부터 도착 통지(Arrival Notice)가 들어옴
- 수출자의 사전 선적 통지(Shipping Advice)가 들어오면, 수입자는 기용한 해운 화물 업자를 정하고, 수취, 통관 수속의 대행을 위임함

- 화환(貨換) 어음계산서 결제의 경우에는 인수 대금 결제 및 상환으로 은행에서 선하증권(B/L) 등 선적 서류를 입수, B/L은 승인을 하고, 해운 화물 업자에게 전달함
- 해운 화물 업자는 B/L 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고 D/O (화물 통과 지시서)을 입수 하여, 이것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, 보세 지역에 반입함
- 만약 B/L이 은행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증서 (L/G) 등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여 짐을 일단 인수, B/L 도착 후 L/G와 교체하도록 함

< 일본 수입 절차 흐름도 >



출처 : 글로벌윈도우 (<http://www.globalwindow.org>)

- 통관과 화물의 국내 수령

- 해운 화물업자는 세관에 "수입(납세)신고서" 및 공급증명서 (Invoice), B/L, 보험 증권, 기타 법령 인허가 상품,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 신고를 함
- 필요한 세관 검사를 받고 관세와 소비세를 납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얻은 후 이를 보세 지역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국내화물로 화물을 수령하게 되며, 보세 운송으로 다른 보세 지역에 전달하고 수입 신고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음

- 계절상품 등 신속한 수령을 희망하는 화물의 경우는 예비 심사 (도착 이전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 검사 필요 여부의 통지받는 제도) 및 수입 신고 시 담보를 제공하는 “수입 허가 전 수령 승인 제도” 를 이용할 수 있음

- AEO (Authorized Economic Operator : 인증기관) 화물

- 화물 보안 관리 및 법령 준수 체제 정비가 우수 업체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의 수령 후 소득 신고 등 빠르고 간결한 통관 (특례 수입 신고제도)이 가능
- 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 : 인정사업자제도, 기업이 물품관리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보안을 확보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한 수출입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며, 인정기업은 개별 통관수속보다 간소화된 심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
- 해당 제도가 상대방 국가와 상호 인정되면 수출입 업자는 자국뿐만이 아닌 상대 국가에서도 통관 수속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

< 일본의 AEO 제도 >

제도	대상사업자	제도의 개요
특수수입 신고제도	일본의 수입자	화물 도착 전에 신고 및 허가를, 납세신고 전에 화물거래 등이 가능한 제도
특수수출 신고제도	일본의 수출자	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를 실시하고,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
특정 보세 승인제도	창고업자	제출에 의한 새로운 보세장치장의 설치, 허가수수료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
인정통관 사업자제도	통관업자	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화물 운송이 가능한 제도
특정 보세 운송제도	운송자 등	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화물 운송이 가능한 제도
인정제조자제도	제조자	인정제조자가 제조한 화물에 대해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가 가능한 제도

출처 : 글로벌윈도우

III 일본 검역 정보

1. 농산물의 수입 관련 규제

□ 식물방역법

- 수입 절차

- 수입 시에는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에 검사 신청을 실시,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‘식물검역증명서’가 필요함(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양식에 따름)
- 식물방역소의 검사 결과 병해충 등의 부착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독, 구제,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, 또한 흙이 붙은 것은 수입 불가함
- 특히 양배추의 경우, Cabbage moth(다이아몬드흰나방)를 비롯한 Lepidoptera(나비류 및 나방류) 및 Aphids(진딧물)의 부착이 많으며, Lepidoptera에 속하는 해충은 겉잎을 먹음
- Noctuid moths(밤나방)은 결구 속에 침입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, 포장 방제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귀엽 제거 등 수출 전 처리, 수확 후 포장 전 선별 등에 주의할 필요 있음

- 수입식물검역제도의 개정

- 보다 효율적인 식물검역조치를 위해 2011년 3월 및 2012년 7월에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어, 검역유해식물리스트, 식물검역조치 내용의 재검토가 이루어짐
- 그 결과 양배추의 생경엽이 검역유해식물리스트에서 해제되어, 2013년 1월 25일 이후 콜로라도감자잎벌레의 발생국으로부터 양배추의 생경엽 수입이 가능하게 됨
-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
 - a. 검역 대상 병해충을 학명으로 목록화

- b. 수입 시의 검사에서 발견은 어렵지만 재배지에서의 검사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검역 대상 병해충종의 숙주식물을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, 재배지 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출국 정부 기관 발행의 조사증명서를 첨부
- c. 수입 시의 검사에서 발견이 매우 어려운 등, 특히 위험도가 높은 검역대상 병해충종의 숙주식물을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, 원칙으로서 수입을 금지함

□ 식품위생법

- 규제 내용

- 수입 시에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기준(농약의 각 식품 안에 잔류하는 양의 한도)에 유의해야 하며, 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후생성 고시 제370호 「식품,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」에 규정되어 있음(잔류 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)
- 잔류 농약 기준치는 「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」에서 열람 가능
(<http://www.ffcr.or.jp/zaidan/FFCRHOME.nsf/pages/MRLs-p>)
-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허용되는 일정량은 0.01ppm 이하
- 또한 식품첨가물과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도 주의를 요함(일본에서는 사용이 규제되어 있는 발색제, 착색료,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가 있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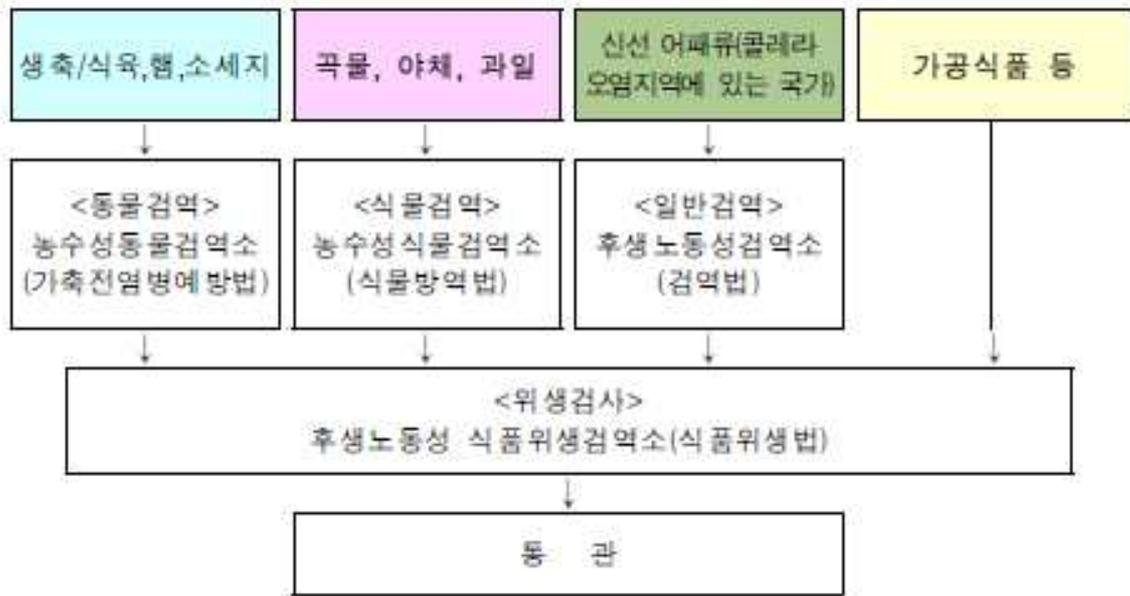
2. 기본적인 검역 절차

- 일본으로 수입된 가공 식품과 검역을 필한 식품은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검역소에서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함

-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절차

① 수입신고서의 제출

- 수입업자는 식품수입신고서를 식품위생검역소에 제출함



출처 : 쌀 가공식품 수출전략 분석 및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

② 수입신고서의 접수

- 식품위생검역소는 식품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 도착 7일전부터 접수하고 있음

③ 서류심사

-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또는 검사가 필요한지를 심사함
- 서류심사의 결과가 문제가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필증이 교부됨
-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치게 됨

④ 검사

-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검사가 실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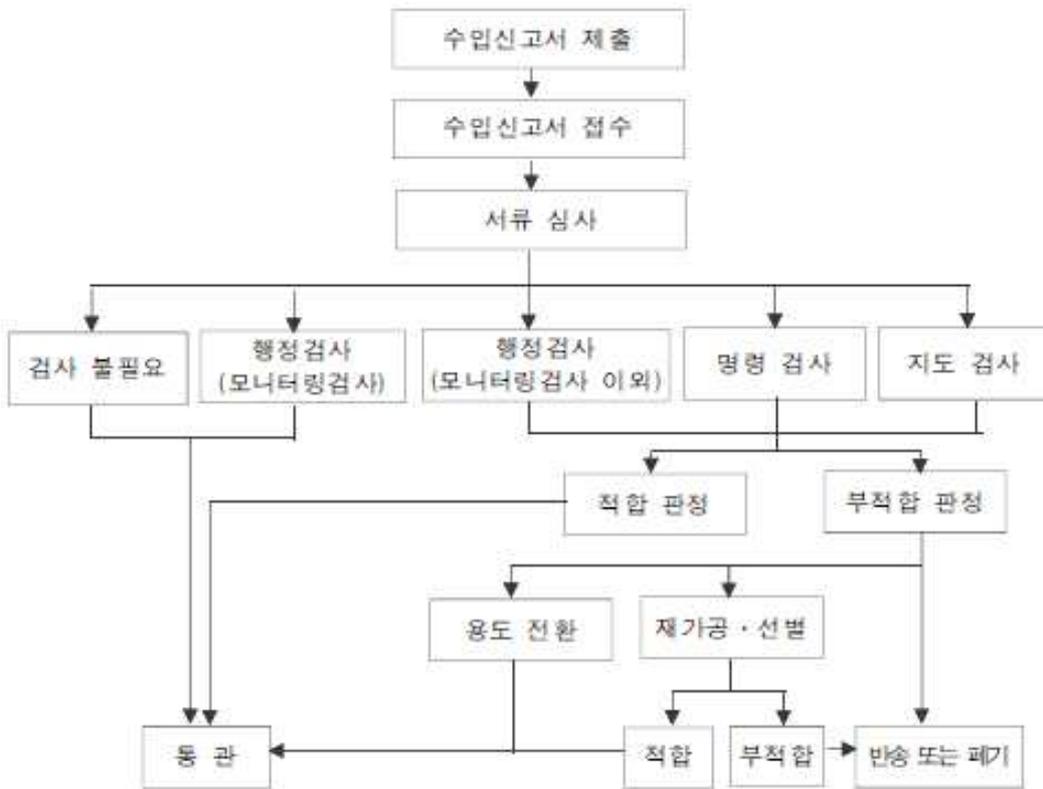
⑤ 검사 결과의 판정 후 절차

- 행정검사 중의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: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위반통지가 전달되고, 위반 물품이 이미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회수 및 폐기 조치됨
- 모니터링 검사 이외의 행정 검사 및 명령 검사의 경우 : 적합 판정 받으면 신고필증이 교부됨,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업자에게 위반내용이 통지되고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되며 세관에도 위반식품 등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통보함

⑥ 지도 검사의 경우

- 수입신고 시에 검역소에 수입업자가 실시한 분석실험결과를 제출하면, 검역소에서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‘식품수입신고필증’ 을 교부함

–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 프로세스



출처 : 글로벌윈도우 (www.globalwindow.org)

3. 관련 제도

– 수입식품사전신고제도

- 모든 식품 등에 대하여 화물 도착 예정 7일전부터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 후 검사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, 식품 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전 또는 반입 후에 신속하게 수입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임

– 식품수입계획제도

- 특정 식품 한 수입계획서등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, 맨 처음 수입 시에 제출한

수입계획서를(일부 식품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의 수입 실적을 첨부하여) 제출하고,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2번 째 수입부터 수입시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임

- 식품수입계획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도, 이후 수입과정에서 식품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의 내용을 기입한 ‘사고발생신고서’를 검역소에 작성·보고 하여야 함

IV 일본 바이어 정보

※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.

※ 참고자료

- 글로벌 윈도우 : www.globalwindow.org
- 주한일본기관 : www.jetro.go.jp/korea/co/jp
- 관세청 : www.customs.go.kr
- 일본 후생노동성 : www.mhlw.go.jp
- 일본 농림수산성 : www.maff.go.jp
-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: www.alic.go.jp
- 라쿠텐 : www.rakuten.com
- 야후재팬 : shopping.yahoo.co.jp
- 아마존재팬 : www.amazon.co.jp
- KOTRA : www.kotra.or.kr
- KATI : www.kati.net